

의안
번호

926

울산광역시중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- 제출연월일 : 2012. 8. 29.(수)
- 제출자 : 권태호 의원 외 6명
- 위원회회부 : 2012. 8. 29.(수)
- 위원회심사 : 2012. 9. 6.(목)

2. 제정이유

- 「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·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」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- 피해보상 대상 등
 - ▶ 피해보상 대상은 야생동물로 인해 울산광역시 중구 관내에서 경작 또는 재배된 농작물에 직접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청구를 한 농업인(타지역 주소지를 둔 농업인 포함)
 - ▶ 유해 야생동물 포획에 참여하는 수렵인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실비보상 지급
 - ▶ 피해보상금 지급한도 연 3,000,000원
 - ▶ 농작물 피해액 산정기준 규정
 - 수확단계 80퍼센트, 중간생육단계 60퍼센트, 파종단계 40퍼센트
 - ▶ 농업인은 피해발생 사실을 관할 동장에게 신고 동장은 피해내용을 정밀조사
- 피해신고 및 조사

4. 근거법령

-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2조
- 「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기준·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」 제18조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·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,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에 따라
- 농업인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